

조문 별 제·개정 이유서

◇ 행정규칙명: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제·개정 이유: 유도등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용전원 상태 표시장치 설치 신설 (안 제3조제31호)

나. 전선당김 시험 신설 (안 제3조제32호)

다. 고장표시에 대한 전원의 색상을 명확하게 하며, 상태 파악 쉽게
가능하도록 색상규정 신설 (안 제4조제2호다목)

라. 전자계전기 인증받은 제품 사용 (안 제4조제3호라목)

마. 외함에 대한 열변형 온도 강화 (안 제7조제3호)

바. 기타표시면 최소 면적 변경 (안제8조제2항)

사. 명암비시험 신설 (안제12조의3)

아. 고온에서의 비상점등시험 도입 (안제18조의3)

자. 비상전원 조도시험 신설 (안제21조의2)

차. 유도등의 색좌표 변경 (안제24조의3)

카. 전원비인가 진동시험 신설 (안제24조의4제1항)

타. 습도시험 기준 강화 (안제24조의7)

파. 표시내구성시험 도입 (안제25조의2)